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017~1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립금의 자원(안 제2조)

- 일반회계 출연금(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3년 평균 초과분),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나. 적립금의 조성(안 제3조)

-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1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
-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
-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
-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

다. 적립금의 사용(안 제4조)

- 사용요건: 세입감소, 긴급한 필요
 - 한 회계연도 사용할 수 있는 한도(적립총액의 50퍼센트)
- 사용용도
 - 급격한 세입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
 -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 긴급한 대규모 사업비 등

라.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제9조)

- 위원장 부군수, 8명 이내 구성

마. 적립금의 존속기한(안 제10조)

- 2021년 12월 31일까지(5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5년간 100억원 목표, 매년 20억원 적립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1. 23.~2.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조례 현황

- 제정 완료(2): 경남도, 고성군

- 입법예고(10): 양산, 창녕, 남해, 밀양, 의령, 산청, 합천, 함양, 함안, 하동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립금의 재원) 군수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적립금의 조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1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4.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적립금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채무부담 사업비
5.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제5조(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적립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재무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적립금의 존속기한)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3조제1항 관련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15년도 결산기준

- 일반회계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a - b)		0	0	0	0	0	0
세출	적립금	20	20	20	20	20	100
	소계(a)	20	20	20	20	20	100
세입	출연금	20	20	20	20	20	100
	소계(b)	20	20	20	20	20	100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